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호	1678
-----------	------

2024. 04. 29.
주택공간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4. 1. 허훈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4. 4. 8.
-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323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(2024. 4. 29. 상정·의결)

II. 제안설명 요지 (허훈 의원)

1. 제안이유

-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되었으나
현행 조례에는 아직 마을공동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마을공동체 관
련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마을공동체의 정의를 삭제함(안 제2조제1항제9호 삭제).
- 나.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이미 폐지된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
지원 조례」와 관련된 시설들을 삭제함(안 제44조제6호 삭제)

- 다.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
(안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).
- 라. 마을공동체의 지도·감독 조항을 삭제함(안 제48조 삭제)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오정균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안은 '22년 12월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폐지¹⁾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'마을공동체' 용어를 정비(삭제)하려는 것으로 2024년 4월 1일 허훈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, 개정사항 중 특이사항은 없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Ⅴ. 토론요지 : 없음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)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(의안번호 제11-275호)('22.12.30.)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.

제44조제6호를 삭제한다.

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한다.

제4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“<u>마을공동체</u>”란 「<u>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u>마을공동체</u>를 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4조(공동이용시설의 범위) 영 제37조제5호에서 “그 밖에 시·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「<u>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</u>」에 따른 <u>마을배움터, 마을활력소 등 마을공동체시설</u></p> <p>제47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마을공동체</u></p>	<p>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4조(공동이용시설의 범위) 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제47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3. 제1항 목적의 달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

4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48조(마을공동체의 지도·감독)

① 시장은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지원 경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·검사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문서로 마을공동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마을공동체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경비 환수 또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주체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<삭제>

2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<삭제>